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8120(본소), 2019가단32772(반소)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현

피고(반소원고) D

소송대리인 E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포함하여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2019.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0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9. 13.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F, G 소재 H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수선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준공일 2017. 11.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선급금 : 계약금액의 30%, 기성금 : 철거완료 후 30%, 철골공사 완료후 30%, 준공 후 10%”

나. 이 사건 공사의 정산약정

1) 이 사건 공사는 2017. 12.경까지 철골공사까지 마쳐진 후 중단되었고, 그 때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선급금 및 철거완료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6,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던 I의 실질적인 대표인 J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K은 2018. 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일금 삼천만 원(30,000,000원) 부가세 포함

위 금액을 종로구 F, G 대수선공사

철골공사 정산금액으로 합의합니다.

* 선지급금액 : 15,800,000원

* 잔금 : 14,200,000원

위 잔금을 건축주 D 대리인 L 동의 하에

2018. 2. 13.까지 지급할 것을 합의합니다.

3)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의 취지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의 정산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정산금액 중 1,580만 원은 이미 선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여 나머지 잔금 1,420만 원을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되, 피고가 2018. 2. 13.까지 원고에게 1,420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원고가 I에게 재차 지급한다는 것이었다.¹⁾

4)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1,42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I에게 별도로 1,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정산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후 피고는 별도로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기성 부분인 판넬창호공사, 전기공사 부분을 합계 2,050만 원(= 판넬창호공사비 1,950만 원 + 전기공사 100만 원)에 도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2018. 2. 말경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2. 14.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은 2020.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감축이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하여 이 부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에 관한 합의서(을 제10호증, 2020. 1. 6.자 첨부자료)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K의 서명이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위 합의서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의무를 피고가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K이 위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 제10호증의 진정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정산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위 합의서에 K의 이름이 ‘L’으로 오기 되어 있는데, 이는 위 합의서의 문구를 작성한 원고의 직원이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차량 수리비 청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파편이 M 소유의 자동차에 떨어짐으로써, 피고가 M에게 차량수비리로 4,583,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공사지연으로 인한 보일러 등 파손 수리비 청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 바닥코일이 동파됨으로써, 피고가 N 등에게 보일러 수리비 및 바닥공사비로 합계 1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6,083,000원(= 4,583,000원 + 1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차량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피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하는 차량수비리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갑 제7호증(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에 의한 차량 파손에 관하여는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갑 제9호증(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약정 사실을 숨긴채 2018. 1. 30.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았던 I와 사이에 자동차 수리비 4,583,000원을 I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440만 원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양 채권을 서로 전액 소멸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사지연으로 인한 보일러 등 파손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각 증거 및 증인 J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의 실질적인 대표인 증인 J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갔을 때 설계 및 구청허가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아서 철골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정,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황측량이 2017. 10. 23.경 이루어지고, 공사 허가와 관련된 구조계산 내지 철골도면도가 2017. 11. 1.경에서야 나온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책임영역인 설계 및 허가 관련 문제로 예상보다 지연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 다툼이 발생하여 철골공사 잔금 등이 미지급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원고는 2017. 12. 말경 피고와 사이에 철골공사 미지급 잔금 및 판넬공사 중도금잔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피고가 직접 수행한다는 취지의 공사타절과 관련한 구두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구두약정에 따라 철골공사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1. 30. 피고와 사이에 재차 철골공사 미지급 잔금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정산약정을 재차 하면서 합의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였던 점, ④ 만일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정산약정을 하면서 원고의 지체상금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민

1) 원고는 2020. 6. 30.자 참고서면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달리 주장하면서 청구원인을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청구가 아니라 구상금에 따른 청구로서 주장하는 측면이 있으나, 위 참고서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 제출된 것으로 변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판결의 내용에 반영하지 하지 아니한다.